

# 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258 / 전송 731-6956  
 처리부서 : 세무행정과(시청본관3층) 담당 임성순

문서번호 세정 13430- 4

시행일자 1998. 1. 12

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	장
보존	년		
국	장	전	결
과	장	위임장	법무담당관 심사필
평가계장		임성순	심사계장
기안	임성순		협조



제목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·고시

1. 내무부세정13430-591('97.12.23)호 및 시장방침제22('98.1.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

○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50%로 한다.

나. 시 행 일

○ 1998년 1월 20일부터

첨부 1) 고시문(안) 1부.

2) 취득·등록세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1부.

3)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의뢰

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의 2 제3항에 의거 토지에 대한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첨부 고시문과 같이 시보에 고시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고시문 1부. 끝.

## 세무행정과장

(제3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 세무관리과장, 부과(1)과장

제목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통보

1. 내무부 세정13430-591(97.12.23)호와 관련입니다.
2.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하니 '98. 1. 20 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.

가.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: 50%

나. 세정13430-397(97. 7. 1)호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취득세의 적용비율은 '98.1.19까지 적용

다.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관할 등기소와 세무서에 통보

첨부 취득·등록세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수신처 서구 1~25, 세무운영과장, 전산정보관리소장

(제 4 안)

수신 내무부장관

참조 세정과장

제목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결과 보고

1. 내무부세정13430-591('97.12.2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'98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별첨 고시문과 같이 결정·고시 하였고 결과보고 합니다.

첨부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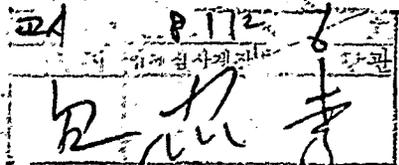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고 시

#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-6호



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 
규정에 의거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  
정고시합니다.

1998년 1월 일

서울특별시장

## 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



19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50%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